
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(제8조 관련)

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		
1. 학원설립·운영자의 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		
2.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		
3. 학원 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 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						
4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를 포기한 경우	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	
			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	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	
		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	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	반환하지 않음
	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2) 독서실의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	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	
				학습장소 사용 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법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			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		
			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		
<p>비고</p> <p>1. 총 교습 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</p>						
<p>「강원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」 제8조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</p>						
<p>학원 설립·운영자(교습자·개인과외교습자)</p>			<p>2024년 3월 1일 (주)SIS캐나다 (서명 또는 인)</p>			

※ 유의사항

1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2. 「강원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」 제8조에 따라 해당 장소에 게시합니다.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